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선원 근로기준에 여성 선원 보호 조항 추가 〉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72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선원 근로기준에 여성 선원 보호 조항 추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연회의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6. 12.

3. 회 부 일 : 2024.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건강진단 시간의 사용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임신한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의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선원 근로기준에 여성 선원 보호 조항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선원과 선박소유자 간의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72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를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 ----- ----- -----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5조제1항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출산휴가 보장 등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조건 준수 등에 필요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더하여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신부 정기건강진단¹⁾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²⁾를 포함하려는 것임.

【 「선원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상 규정 】

적 용 규 정	내 용
근로자, 사용자, 근로의 정의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등 · 근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근로조건 기준, 결정, 준수 및 균등처우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근로기준법 이하로 근로조건 낮출수 없음(제3조) · 근로자와 사용자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 결정(제4조) · 근로계약 준수 및 이행의무(제5조) · 성별, 국적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으로 근로조건 차별금지(제6조)

1)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2)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폭행 금지 등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근로자에 대한 폭행 금지(제8조) · 영리로 취업 개입·중간인으로서 이익 취득 금지(제9조) · 선거권,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한 시간 보장의무(제10조)
임산부의 보호 등 (제40조, 제68조, 제74조)	· 근로자의 취업방해 금지(제40조) · 미성년자 독자적으로 임금청구 가능(제68조) · 임산부 근로자 출산휴가 등 보장, 시간외근로 금지, 출산 휴가 후 복직보장 등(제74조)
벌칙 (제107조, 제110조, 제114조)	· 제8조·제9조·제40조 위반시 5년이하 징역·5천만원 벌금 · 제10조·제74조 위반시 2년이하 징역·2천만원 벌금 · 제6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 일반 여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측면과 현행법 제5조에서 임산부의 보호 규정을 선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여성을 보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선원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짐.

- 국적 선원의 성별 현황을 보면, 여성선원은 '23년 12월 기준 281명이 근무하고 있음.

【 성별·업종별 국적 선원 현황 】

(‘23.12말 기준 / 잠정)

구분	총계			남성			여성		
	합계	해기사	부원	계	해기사	부원	계	해기사	부원
합계	30,587	20,061	10,526	30,306	19,871	10,435	281	190	91
외항선	8,634	7,356	1,278	8,504	7,241	1,263	130	115	15
내항선	7,518	5,945	1,573	7,407	5,886	1,521	111	59	52
원양어선	1,104	980	124	1,104	980	124	-	-	-
연근해어선	11,608	4,225	7,383	11,603	4,223	7,380	5	2	3
해외취업상선	1,423	1,328	95	1,388	1,314	74	35	14	21
해외취업어선	300	227	73	300	227	73	-	-	-

※ 해양수산부

- 참고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413호, 2019.4.30.)에서도 개정안과 동일하게 여성 파견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적용하고 있음.³⁾

□ 관계기관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임신한 여성 선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19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